



이의신청 지침

이의신청을 제출하려면 먼저 재심 요구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심사관이 이를 거절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효화 신청서(Motion to Vacate)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교통 심사 이의신청 위원회(Traffic Adjudication Appeals Board)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요구나 무효화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무엇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1. 주차 위반 티켓
2. 영상 단속 티켓
3. 주행중 위반
4. 청문회에서 청문회 심사관이 명령한 운전 권한 또는 운전 면허증 취소 또는 정지
5. 무효화 신청의 거절
6. 제한적 작업 면허 신청의 거절

이의신청 제출 기간

모든 이의 신청은 반드시 재심 요구 거절 또는 무효화 신청 거절 시점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기록물

기록물은 청문회 녹음 내용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참여한 주행중 위반 청문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접 참여한 청문회에서 운전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청문회 기록물 2 부를 주문해야 합니다.

직접 주차 위반 티켓 또는 영상 단속 티켓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우편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록물 예치금 \$50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록물 비용이 예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합니다. 비용이 예치금보다 높을 때에는 추가 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발부되며 이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위원회가 심의 없이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 양식 이면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벌금 및 과태료,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 \$50 달러의 기록물 예치금 (해당 시)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PO Box 77411, Washington, DC 20013, Attn: Appeals Office**. 모든 수수료는 수취인을 D.C. Treasurer 로 지정하여 수표 또는 머니 오더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모든 납부액은 환불됩니다.

귀하는 모든 벌금, 과태료 및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납부 수표에 대해 지급 거절이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당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이의신청 위원회의 심의 사항

이의신청 위원회에서는 위반 티켓, 증언 및 원래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와 청문회 기록물, 그리고 귀하가 작성한 간단한 이의신청 근거 설명서를 심의합니다. 이의신청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위원회는 이전에 청문회 심사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위원회가 귀하의 사건을 판결하는 데에 최대 2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www.dmv.dc.gov를 참고하거나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의 유형을 표시하십시오.

- ☐ 주차 위반 티켓 또는 영상 단속 티켓
- ☐ 주행중 위반
- ☐ 운전면허증 취소
- ☐ 무효화 신청의 거절
- ☐ 제한적 작업 면허 신청의 거절

2. 아래 정보란을 기입하십시오.

일자: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중간 이름(Middle Name)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티켓 번호

3. 해당 수수료:

- ☐ 주차 위반 티켓 또는 영상 단속 티켓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벌금, 과태료 및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각 티켓에 대하여 \$10 달러가 추가됩니다.
- ☐ 주행중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벌금, 과태료 및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와 \$50 달러의 기록물 예치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각 티켓에 대하여 \$10 달러가 추가됩니다.
- ☐ 청문회 심사관에 의한 운전 면허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와 \$50 달러의 기록물 예치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무효화 신청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벌금, 과태료 및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각 티켓에 대하여 \$10 달러가 추가됩니다.

참고: 기록물 예치금 \$50 달러는 귀하가 직접 참여한 청문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편 심사로 수행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기록물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이의신청 위원회에 쓴 진술서

이의신청 위원회는 청문회 심사관에게 제시한 증거만 심사합니다. 귀하는 이의신청 근거를 설명하는 간단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서 체크리스트

이의신청서는 귀하의 재심 요구 또는 무효화 청구가 거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 벌금 및 과태료 납부
- ✓ 각 티켓에 대해 \$10 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 납부
- ✓ 기록물 예치금 수수료 \$50 달러 납부 (주행중 위반 또는 운전 면허 취소에 관한 직접 참여 청문회인 경우)
- ✓ 이의신청서 (본 양식) 및 위원회에 쓴 간단한 진술서 제출

발송 주소: PO Box 77411, Washington, DC 20013, Attn: Appeals Office

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기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dmv.dc.gov를 참고하거나 전화 311 번 또는 202-737-4404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DC 정부당국이나 공무원의 낭비, 부당행위, 남용행위를 보고하려면

DC 감찰국(Office of the DC Inspector General) 전화 1-800-521-1639 번으로 연락 주십시오.